

PL(제조물 책임)과 우리의 대응

임 석 주
한국열처리

1. 서 론

제조물 책임(PL)법이 우리나라에서 준비되고 발효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었다. 소비자를 우선 보호하게 되면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기업관련 단체들과 소비자 쪽에서 있는 소비자보호 단체들과의 알력과 마찰 등으로 법이 만들어지고도 1년이 넘게 지난 작년 7월부터 법이 발효되었다. 많은 기업들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PL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느라 부산하게 움직이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9개월 째 접어들고 있다.

법이 발효되면 금방 PL 소송이 여기 저기서 터져 어려움에 처하는 회사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던 것과는 다르게 별로 매스컴에 오르 내리는 PL소송건이 생기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은 공연한 소란을 떨었다고 생각하며 머리 속에서 PL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PL법이 적용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PL법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소송보다는 우선 제조업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소송을 대행해 줄 법률회사들의 준비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는 시점 즉, 돈 벌이가 된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점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점을 볼 때 시행 초기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이라도 PL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야 기업들이 살아 남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자동차, 중장비 등 기계산업의 기초이자 핵심인 열처리 분야의 경우 PL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고, 제품 결함에 대한 열처리공정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 때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PL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이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PL의 정의

PL이란 “Product Liability”의 약자로서 “제조물 책임”이라 부르며, “결합제품에 의하여 그 제품의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 판매자 등 그 제품의 제조·유통·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사법적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품결함은 설계, 제조, 판매상의 결함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결함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의 원인이 될 때 그 소비자 또는 이용자는 그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과정에 관여한 자를 상대로 PL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된다.

3. PL법 시행 전, 후의 주요 차이점

여기서 제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PL법 시행 전과 후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여 명확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PL법 시행 전>

제품 사고 발생 민법에 따라 제조업자 고소 가능
기업측의 과실(실수)를 상세히 설명해야 승소 가능함
(소비자 불리)

<PL법 시행 후>

제품 사고 발생 PL법(민법의 특별법)에 따라 제조업자 고소 가능. 사고 발생과 제품 결함의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승소 가능함(소비자 유리)

▶기업측의 과실과 제품 결함의 차이점

과실 = 기업이 정하고 공표한 사양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 예를 들어 빵에 세균이 100 마리 이하로 합격기준이 정해진 경우 실제로 빵에서 120마리의 세균이 검출되었을 때 기업 측의 과실이라고 함

결합 = 빵의 합격기준이 세균 100마리 이하 인 경우 실제로 80마리가 검출된(합격된) 빵을 먹은 사람이 배탈이 났을 때 빵에 결합이 있다고 함

즉, 사양과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한 원인의 요소가 제품에 존재 할 때 결합이 있다고 함

따라서 PL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편익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양을 지키고 만 있다고 PL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이다. 소비자, 이용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 품질사양을 한층 강화하고, 강화된 사양을 실수없이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4. PL시대, 무엇이 변하는가?

PL법의 입법은 소비자 뿐 아니라 기업활동에도 커다란 변화가 따르게 된다. 이는 생산자시대에서 소비자시대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 만큼 기업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소송의 증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과거에는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했고, 또 소송에 가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극히 적었으므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이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소비자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소송의 증가는 소송 제기단계나 소송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와 제조업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대부분 기각되는 경향이 있으며, 법원이나 분쟁 조정기관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져 최종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적은 편이나 기업의 대응방안에 따라 사건이 판결까지 가게 되는 경우 제조자에게 엄청난 손해배상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어 제조업자의 사전 대응방안

이 철저히 요구된다 하겠다.

▶안전기준의 강화

각 국가별로 각종 제조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관련 안전법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제조업자는 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기준의 강화는 다음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

- 업계 전체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고 연구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를 유도하여 더욱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독려하는 기능을 한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더욱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궁극적으로 제품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줄여 나가는데 있다.

▶클레임의 증가

대부분의 제조업자들은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일에 대하여 두려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PL소송과 둘러싼 대책을 세우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주의해야 할 일은 소송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른바 소송의 예비군인 클레임이 틀림 없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PL법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소송보다도 우선 제조업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풍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시행한 나라에서도 그렇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강력해지는 소비자 단체

PL법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생활의 안전과 향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 바로 “소비자 보호법”이다. 우리나라에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상당히 많은 수의 단체들이 현재 활동 중에 있다. PL법의 시행에 따라 이들 소비자 단체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기업의 활동도 과거의 적대시하는 태도에서 이들 단체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고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PL 대응방안

PL법 입법후 각 제조업자들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그것도 대부분 대기업

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아직도 중소기업에서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그저 대기업의 지침에 따라 대응하거나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들이 나름대로 PLP(PL Prevention-제조물 책임예방), PLD(PL Defense-제조물 책임방어), PLI(PL Insurance-제조물 책임보험) 등의 단계별 대응방안을 세우고 있으며, PL때문에 노력한다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 하여 활동의 명칭을 “제품안전 활동” 등으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다. PLP, PLD, PLI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PLP: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품질 관리, 클레임처리, 경고라벨 적용 등

▶PLD: 소송에 대비한 문서작성 및 관리, 변호사 및 전문가 확보 등

▶PLI: PL보험 가입, 사내 배상 체계 확립 등

부품을 대기업에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열처리 임가공 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대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제품결함의 원인이 중소기업인 협력회사의 부품제조에 있다면 배상액을 협력회사에게 구상토록 한다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엄격히 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에서도 PL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PLP, PLD, PLI의 활동을 각자의 현실과 특성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의 설계사양을 받아 부품을 제조하거나 임가공하는 경우 우선 중요한 것은 그 사양에 맞게 철저히 품질을 관리하는 일이다. 그리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이해 당사자에게 보여주고, 관련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열처리업체의 경우 사양을 대기업으로부터 받아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품질특성 항목이 경도, 경화깊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특성항목이 문제가 되어 제품결함으로 발전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이 있는 열처리업체로서 사양을 제시하여 상호협의 확정하는 경우 결함 발생의 책임에 대해 논쟁을 할 수도 있다.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열처리 과정의 특성때문에 단순한 품질관리만으로는 PL소송에서 승소를 기약할 수 없다. 열처리 제품의 안전을 위해 부단히 기술을 개선, 개발하고 그와 병행하여 철저한 품질관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경영자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품질경영활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PL시대에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제품안전을 위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철저한 품질경영활동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